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나2131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나2131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소1721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

변론 종결2023. 3. 14.

판결 선고2023. 4. 11.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소1721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18,802,62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1. 이후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2007. 4. 무렵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사서 되팔면 이익이 생긴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구입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명의로 자동차 등록 명의만 이전하고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자동차 인도의무 채무불이행 또는 자동차 관리 소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차량대금, 등록세, 과태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5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자동차 구입 업무만을 위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7 등 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C을 통하여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체가 C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자동차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관리를 위법하게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항현찬

판사오성우